

2006. 5. 9.(화)배포

문의 / 중소기업지원팀장 손승현 (750-1180)

성종원 사무관 (750-2350) jwseong@mic.go.kr

## IT 중소·벤처기업 M&A 투자 촉진

### - 정통부,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정 -

정보통신부는 5월 8일 IT중소벤처기업 생태계 건전화와 IT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의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은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결성하는 IT전문투자조합의 기본 운영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향후 결성될 개별 조합의 규약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건전화를 위한 M&A 목적 투자 허용 등 일부 내용은 조합원 동의를 거쳐서 기존 투자조합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1998년부터 IT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총 9,317억원(정부 출자 3,367억원, 민간 출자 5,950억원) 규모의 IT전문투자조합 43개를 결성하고, 2005년 말까지 817개 기업에 총 7,163억을 투자하였다. 특히 기술력은 뛰어나나 담보부족, 고 위험으로 인해 은행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창업 3년 이내기업에 55%)에 집중투자하였으며, 그 동안 57개 투자기업이 코스닥 시장 등 국내시장에 상장되고 3개 기업이 나스닥 등 해외시장에 상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번 표준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은 IT중소벤처기업 생태환경 건전화와 기업 대형화에 필요한 M&A 투자 촉진, 벤처투자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의무비율 완화, 투자조합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조합 운영책임자 변경 절차 보완, 투자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합결성 및 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이다.

정통부는 금번 표준규약 개정을 통해 향후 IT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조합의 안정성과 운영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투자시장 환경변화 등에 맞춰 벤처캐피탈리스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규조합 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붙임 : 정통부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참고】

정통부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M&A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지배 목적 투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li> <li>- 회생지원 등을 위한 일시적 경영지배 목적 투자만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9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경영지배 투자 허용</li> </ul> </li> <li>※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서 허용하는 투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7년 이내의 기간동안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A활성화 차원에서 창업지원법령 개정사항을 규약에 반영</li> </ul>
투자의무 비율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조합 결성 후 3년 이내에 출자총액의 60% 이상 투자를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조합 결성 후 3년 이내에 출자총액의 50% 이상, 0년까지 출자금 총액의 00% 이상 투자</li> <li>※ 창업지원법령상 의무비율 달성 후 일정시점까지 정책적 의무비율을 달성도록 탄력적 의무비율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력적 투자 유도를 위한 투자의무 비율 완화로 조합 운영의 안정성 제고</li> </ul>
투자조합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펀드 매니저 변경 관련 절차 규정 없음(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펀드 매니저 변경시 조합원 특별결의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조합 운영의 안정성 강화</li> <li>○ 중기청 표준규약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실금 범위에 원금만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실금 범위에 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실금 범위 강화</li> <li>○ 중기청 표준규약 반영</li> </ul>
투자조합 운영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는 출자신청서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제출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출자신청서 제출 절차를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합 결성 효율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회소집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전 까지 소집 통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일 이전 소집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전원 동의를 통해 소집 통지기간 변경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한 업무 처리를 위한 총회 소집 통지기간의 탄력적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운영 실적보고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반기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송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반기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송부하는 절차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집행조합원의 보고 의무부담 완화</li> </ul>
기타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재산 관리수탁기관 지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통부가 수탁기관을 지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집행조합원이 정통부가 지정한 수탁기관 Pool 중에서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 지정방법 개선</li> </ul>